

# 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대표발의 : 송은영 의원)

의안 번호	11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: 2026. 3. 5.

발 의 자: 송은영, 김판조 의원(2명)

찬 성 자: 성용근, 김석규, 이종희,  
박일배, 최순희, 이기준  
의원(6명)

## 1. 제안이유

관급공사 수행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하도급업체 및 노동자의 임금 및 임차료 체불을 방지하고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고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사업주의 책무 정비(안 제4조)
- 나. 시장의 책무 규정(안 제5조)
- 다. 신고센터 업무 범위 규정(안 제9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건설산업기본법」 및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22조
- 2)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## 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시”를 “양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“시장”을 “양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사업주는 관급공사를 수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.

1. 건설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할 경우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2조에 따른 하도급계약
2. 일용노동자, 건설기계노동자 그 밖의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근로계약
3.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계약

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계약의 경우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, 건설기계임대차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

서(표준약관 제10059호)로 계약체결이 부적절한 경우 사전에 계약부  
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수정계약서로 계약체결 할 수 있다.

제5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, 제5조를 다  
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(시장의 책무) ① 시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상생협력 관계  
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과 하도급 부  
조리 근절을 민간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.

② 시장은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급인, 하수급  
인, 전문가, 공사부서의 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 정책에 반영  
해야 한다.

③ 시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, 어음지  
급, 이중계약, 임금체불 등의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, 발주자  
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‘하도급대금 직불제’가  
실시 및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7조(중전의 제6조)제1항 중 “제4조제4항”을 “제4조제5항”으로 하고,  
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  
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8조(중전의 제7조) 제2항제4호 중 “제6조제1항”을 “제7조제1항”으로  
한다.

제9조(중전의 제8조)제1항 중 “체불임금 및 체불임차료 신고센터”를 “부

조리신고센터(이하 “신고센터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

1. 임금 및 임차료 체불에 관한 신고 접수
2. 저가 하도급, 자재·장비 임대 계약 등 하도급 관련 부조리의 신고 접수

③ 신고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제10조(종전의 제9조) 중 “제8조”를 “제9조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개 정 안
<p>제3조(적용대상)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<u>시가</u>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·용역사업에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주로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그 밖에 <u>시장</u>이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p> <p>제4조(사업주의 책무) ①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노동자, 건설기계노동자 그 밖의 노동자와 노동계약(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) 및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다만, 표준계약서로 계약체결이 부적절한 경우 사전에 계약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</p>	<p>제3조(적용대상) ① ----- ----- <u>양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<u>양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</u>----- -----</p> <p>제4조(사업주의 책무) ① 사업주는 <u>관급공사를 수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<u>건설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할 경우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2조에 따른 하도급계약</u></p> <p>2. <u>일용노동자, 건설기계노동자 그 밖의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근로계약</u></p>

수정계약서로 계약체결 할 수 있다.

<신 설>

② ~ ④ (생 략)

<신 설>

3. 건설기계임대차의 경우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계약

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계약의 경우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, 건설기계임대차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(표준약관 제10059호)로 계약체결이 부적절한 경우 사전에 계약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수정계약서로 계약체결 할 수 있다.

③ ~ ⑤ (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)

제5조(시장의 책무) ① 시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상생협력 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과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민간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.

② 시장은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급인, 하수급인, 전문가, 공사부서의

제5조 (생략)

제6조(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) ①

공사감독자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차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

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7조(대가의 직접지급) ① (생략)

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.

③ 시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, 어음지급, 이중계약, 임금체불 등의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,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‘하도급대금 직불제’가 실시 및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6조 (현행 제5조와 같음)

제7조(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) ①

----- 제4조제5항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.

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8조(대가의 직접지급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4. 제6조제1항에 따른 임금 및 임차료 체불에 관한 공사감독자의 지도·감독과 질문·조사에 관한 사항

제8조(신고센터 설치 등) ① 시장은 노동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차료 신고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<신 설>

제9조(노동자 상담) 제8조의 신고센터에 근무하는 관계공무원을 배치하여 노동자의 체불임금 등

② -----  
-----  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제7조제1항-----  
-----  
-----

제9조(신고센터 설치 등) ① -----  
-----  
----- 부조리신고센터(이하 “신고센터”라 한다)-----  
-----.

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

1. 임금 및 임차료 체불에 관한 신고 접수
2. 저가 하도급, 자재·장비 임대 계약 등 하도급 관련 부조리의 신고 접수

③ 신고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제10조(노동자 상담) 제9조-----  
-----  
-----

상담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.

제10조 ~ 제12조 (생략)

-----  
--.

제11조 ~ 제13조 (현행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)

## 관계 법령

### ■ 「건설산업기본법」

제22조(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) 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(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.

②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, 공사 기간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,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(하도급의 경우는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. 이하 “표준계약서”라 한다)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.

### ■ 「건설기계관리법」

제22조(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) ①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(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2조에 따른 도급계약은 제외한다)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,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, 임대차 기간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, 서명

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.

④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.

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가 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.

⑥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인 경우 해당 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#### ▣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

제3조의2(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·개정 및 사용)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(이하 이 조에서 “사업자등”이라 한다)에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.